

공공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된 이전가격(TP) 시행령 초안



At a glance...

2020년 6월 22일

베트남 재무부(MoF) 웹사이트에, 새로운 이전가격 시행령(Transfer Pricing Decree) 초안이 공공의 의견 수렴을 위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정되는 경우, 동 이전가격 시행령 안은 기존 시행령 20 (Decree 20/2017/ND-CP)을 대체할 것입니다. 시행일은 이르면 다음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초안은 이자비용의 법인세 손금 한도 및 기타 이전 가격 관련 이슈들에 대한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주요 변경 사항들

비교가능 대상에 대한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 상용 데이터베이스들이 납세자와 세무당국 모두에 있어 비교가능대상의 검증된 출처로서 명백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 동 이전가격 시행령 초안은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공정한 성격에 대해 평가하고 산정할 때, 벤치마킹 스타디를 수행하기 위한 검증된 출처로 상업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을 인정하고, 또한 (세무당국의) 내부적인 데이터베이스 (즉, “비공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들의 요구사항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조정(TP adjustments)을 평가하고 부과하기 위해 세무당국의 자체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권리와 권한을 유지합니다.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의 인상 및 적용

- 이자비용의 법인세 손금 인정 한도가 EBITDA (이자 법인세 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20%에서 30%로 인상되었습니다. 동 한도는 순이자비용 (즉, 한도 비교 전, 이자수익과 상계된 이자비용)에 적용됩니다.
-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은 후속 연도들로 이월될 수 있으며, 해당 연도들의 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 손금산입의 기한은 5년입니다.
- 공적 개발 원조 (ODA) 자금,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우대 대출, 국가 프로그램 및 국가 사회복지 정책의 이행을 위한 대출을 포함하여, 특정 유형의 자금 조달의 경우는 이제 동 한도 적용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정상가격 범위의 수정

- 정상가격 범위가 (기존 시행령 20 하에서의 1사분위수(25번째 백분위수)부터 3사분위수(75번째 백분위수)까지와 상이하게) 35번째 백분위수부터 75번째 백분위수까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한이 10% 상승될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 따라서, 납세자들은 이전가격 이익률이 새로운 범위 내에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다가오는 연도들에 대한 이전가격 포지션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별보고서 (CbCR)에 대한 새로운 지침들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변경 사항들이 제안되었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한 회계연도 동안 전 세계 연결기준 매출액이 VND 18조 동을 초과하는 “최상위 베트남 모회사”의 경우, 동 국가별보고서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베트남 세무당국에 제출될 것이 요구됩니다.
- “해외에 최상위 모회사가 있는 베트남 기업들”의 경우, 조세정보자동교환(AEOI) 절차를 통해 베트남 세무 당국이 그러한 국가별보고서에 접근 가능할 경우, 국가별보고서는 지역별로(베트남에서) 제출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상황들에서는, 기업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해외 최상위 모회사가 각 조세관할지역에서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
 - 최상위 모회사가 위치하는 조세관할지역(국가)이 베트남과 국제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국가별보고서 제출 기한일 현재 베트남과 조세정보자동교환(AEOI)에 대한 다자간 협정(MCAA)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최상위 모회사가 위치하는 조세관할지역(국가)이 베트남과 동 다자간 협정을 체결했으나, 조세정보자동교환 방식을 연기하거나 국가별보고서가 자동적으로 베트남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 베트남 내에 동일 그룹의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있는 경우, 최상위 모회사는 동 모회사를 대신하여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정된 기업 (즉, 베트남 납세자)을 베트남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최상위 모회사의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베트남 세무 당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으로, 국가별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와 데이터는 오직 세무 위험 관리 및 세무 당국 간 정보 교환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베트남 세무 당국의 세금 조정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단계 (Three-tiered) 이전가격 문서화 작성 의무의 면제

이전가격 시행령 초안은 다음의 경우, 3 단계 이전가격 문서화의 작성 의무 면제를 확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납세자가 특수관계자들과 베트남 내에서 국내 거래만 발생시키고,
- 납세자와 특수관계자들 간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동일하고,
- 어떠한 당사자도 택스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지 않는 경우.

이를 통해 다수의 기업들에 있어 이전가격 규정 준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이전가격 시행령 초안의 시행일

동 이전가격 시행령 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Contact us

본 Newsletter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업 전담팀



Lee Moo Yeol (이무열)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4 3946 2246 Ext. 1010
mooyeol.lee@pwc.com



Jo Su Jin (조수진)
Associate
+84 28 3823 0796 Ext. 4630
jo.sujin@pwc.com

호치민시 오피스:



Nguyen Thanh Trung
Partner
+84 (28) 3823 0796, Ext: 1513
nguyen.thanh.trung@pwc.com



Nguyen Huong Giang
Partner
+84 (24) 3946 2246, Ext. 1502
n.huong.giang@pwc.com



Judith Henry
Director
+84 (28) 3823 0796, Ext: 1525
judith.henry@pwc.com



Monika Mindszenti
Director
+84 (24) 3946 2246, Ext: 1506
monika.mindszenti@pwc.com

www.pwc.com/vn



facebook.com/pwcvietnam



youtube.com/pwcvietnam



linked.com/company/pwc-vietnam

At PwC Vietnam, our purpose is to build trust in society and solve important problems. We're a member of the PwC network of firms in **157 countries** with over **276,000 people** who are committed to delivering quality in assurance, advisory, tax and legal services. Find out more and tell us what matters to you by visiting us at www.pwc.com/vn.

©2020 PwC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Vietnam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structure.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